2004. 9. 20.(월)

제105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9. 9.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4. 9. 13.

다. 상 정 일 자 : 2004. 9. 16.(제105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가. 제안사유

○ 읍면방재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과 의회사무국의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53명에서 962명으로 9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 : 937명을 945명으로 8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을 17명으로 1명 증원

○ 한시정원인 자치행정과의 정보화사업 정원 2명을 상시정원으로 책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정원 변동현황>

구 분	구조조정 이전정원	2001.12. 31현전원	현정원	표준 정원	보정 정원	금회 조정	조정후
계	1,114	896	953	948	976	9	962
일 반 직			746	739		9	755
기능·고용			190	190			190
별정·정무			17	19			17

○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022(2004. 5. 18)호 및 충청북도 자치행정과-4993(2004. 5. 19)호의 읍면 방재인력 보강지침에 의거「읍면동」기능전환 추진 지침상의 읍면동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추가 책정되는 정원으로서 읍면의 방재업무는 평상시에는 수방자재의 비축관리, 하천·수리시설등 재해예방시설 현지예찰, 시설물 안전점검 등이며 재해·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재해구호등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관리, 피해 실태조사등으로 방재업무의 성격상 일정부분은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읍면에 방재담당 공무원을 자체 실정에 따라 7급이하 정원을 책정하되 직렬은 토목직, 건축직 또는 이의 복수직으로 책정토록 하였으며 보정정원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는 표준정원은 948명이며, 보정정원이 976명으로 금번에 의회사무국1명을 포함 9명이 증원된다고 하여도 962명으로 표준정원보다는 14명 초과되었으나 보정정원보다 14명이 적으므로 상급부서의 승인없이 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보정정원 내라고 하더라도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인원을 증원코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항에 의한 인력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 읍면동 방재인력 보강지침(2004. 5. 19)에 의하면(행정사항으로) 본 지침에 의거 읍면에 방재담당 공무원을 조속히 보강토록 하였음에도 별도의 충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므로 인력보강이 늦어지고 있으며

○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조정권고(자치정보담당관-1229, 2003. 10.27.)호에 의하면 시군구의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 6. 30.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승인한 한시정원이 표준정원 범위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존속기한까지 한시정원이 있는 각시군구에서는 금년 정례회등 2003년 조례개정시 상시정원으로 변경하여 시군구의 정보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시달된바 있음으로 한시정원이 존속되는 2004. 6. 30. 이전까지는 정리하였어야 할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인력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6월 30일자, 12월 31일자을 기준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와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새로운 행정장비의 도입, 교통통신의 발달, 인구의 감소 등은 인력의 감소요인에 따른 조직의 진단을 정확히 파악하여 증원요인과 감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표준정원 14명을 초과하여 보정정원의 인원을 증원코자 할 때에는 교부세 산정 등 각종 인센티브 혜택에 불이익을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운영에 사각지대는 없는지등도 살펴보아야 할검임.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김진학 위원)

○ 예산규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검토를 안했다면 기본적 검토도 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 수해나 소방대책이나 방재대책에 대해서 시급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계획대로 읍면에 방재인력을 보강시켰을 경우 재해가 예방되리라는 확증이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 IMF이후에 1114명에서 2001년 12월 31일 현재 896명인 정원이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유경상 위원)

○ 보정정원은 어떤 뜻을 의미니까? (유경상 위원)

○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공무원수가 896명이었는데 그당시 제천시 인구는? (이동수 위원)

○ 공무원수가 증원했을때에 교부세 산정 또는 인센티브의 불이익 검토를 좀 해보셨는가? (이동수 위원)

○ 업무량에 따라 인원배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노는 공무원이 없고 똑같은 시간에 끝이 나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전부다 쏠려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냐? (이동수 위원)

○ 읍면방재인력 보강 지침이 금년 5월초에 내려와 6월, 7월, 8월, 9월 거의 100일이상 지체했는데 왜 이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윤성열 위원)

○ 대부분 9급으로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직급이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성열 위원)

나. 답변요지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 제가 검토한게 없음.

○ 공무원 정원수만 따져본다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정원감축에 따른 8억1700만원정도가 증액될 것 같고 비정규직이 현재 정원을 초과하고 있음에 따라 3억9천정도 감될걸로 예상하고 있음.

○ 확증은 없음. 방재업무가 시급하다고 보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방재인력을 보강시키는 것임.

○ 기구조직이 개편되면서 IMF이후 정원보다 많이 줄어든건 사실임. 그러나 그 이후 행정사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증가되는 추세임.

○ 행자부령에 의해서 표준정원을 정해 놓고 부득이하게 행정수요가 갑자기 증가했을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보정정원을 정해 놨음.

○ 15만에 못미쳤습니다.

○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저도 사무인력에 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특성상 그것을 객관적으로 계량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죄송하게 생각하며 인력충원관계도 정원을 조례상 정원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인력을 충원시키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저희들 현재 인력수급계획은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여서 그렇게 늦게 되었음

○ 저희들은 9급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무라 생각했기 때문에 9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임.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 본조례안 개정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고 본조례에 대한 상부기관에서의 조치는 기한을 넘긴지 굉장히 오래 됐음. 이 자체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소홀함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는 없음. 그리고 지방자치 운영에 근간이 되는 예산소요에 대한 분석내지 인력운영 계획에 관하여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것이 미흡하다는 점 이런 것을 봐서는 아직 급하지 않은 일로 인정되지 않느냐라고 인식할 수 밖에는 없음. 하지만 시기는 놓쳤더라도 개선해서 보다 잘해 보자는 의지로 파악을 하고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읍면에 배치하는 토목직에 대해서 8, 9급으로 한정되어 있으

나 좀더 경험있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배치하는 토목직을 8급으로 국한을 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토론을 말씀드림. (김진학 의원)

○ 경험있는 8급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정원조례에 8급 2명, 9급 2명으로 했으나 이대로 읍면에 배치할수도 있고 본청으로도 배치할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운영토록 하겠음. (자치행정과장 이양식)

○ 좀더 경험있는 직원을 읍면에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김진학 의원)

○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이양식)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